

총리령 제 호

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8조의3제1항제2호 중 “최근 3년 이내에”를 “매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시행일 이전 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시행일 이후 매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8조의3(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등) ① 영 제82조의3 제3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 자의 세부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68조의3(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신고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 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 람으로서 선임일부터 <u>최근 3년</u> <u>이내에</u> 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	2. ----- ----- ----- ----- <u>매년</u> ---- ----- ----- -----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